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11. 9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4년 10월 25일 · 서순보 의원의 11인 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26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4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4. 11. 5) 상정 · 보류
 - 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3. 21) 상정 · 보류
 - 제15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11. 9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서순보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, 하수도, 가로등,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(2003. 5. 29 개정, 2003. 11. 30 시행)하게 됨에 따라 그 지원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함 (안 제2조).
 - 지원대상은 단지내 도로, 가로등, 하수도, 경로당 등 공용시설물이며, 지원한도는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제4조).
 - 지원방법은 각 공동주택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·결정하도록 함 (안제5조).
 -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, 구의원, 주택·건축·토목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(안 제6조).

-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사업계획의 수립·집행, 지원사업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하도록 함 (안 제6조).
-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시 발언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함 (안 제10제3항).
-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 (안 제11조).
-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,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함 (안 제13조).
- 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과 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관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반환하도록 함 (안 제15조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 論 要 旨

- 이종환 위원의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-안 제명 및 제2조중 상위 근거 법령을 법제처 법령심사기준에 의하여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한 것이며

-안 제6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항의 신설에 대하여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착 및 교통난

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시책사업 및 범시민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「승용차요일제」 추진과 관련 서울시 주택의 약 50%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적극적인 승용차요일제 시행확산 및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체 추진의지를 유도함으로써 「승용차요일제」의 조기 정착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신설하였음.

○ 수정안 본문

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”로 한다.

안 제2조중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”을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3호중 “조경시설”을 삭제한다.

안 제7조 내지 제18조를 제8조 내지 제19조로 각각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안 제6조(우선순위) ①각 공동주택의 지원 우선순위는 준공인가 년도, 세대수, 사업의 긴급성,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아파트단지 등 승용차요일제(이하 “승용차요일제”라 한다)의 자율참여를 위하여 아파트관리규약에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사항을 포함하는 규약을 개정한 경우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행 사업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안 제6조를 제7조 하고 동조제2항중 “15인”을 “17인”하며, 동조 제4항제2호중 “2인”을 “4인”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중 “조경분야”를 삭제한다.

○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	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 원조례
제2조(적용범위) 공동주택관리지원 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종로 구에 소재하는 주택법과 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 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----- ----- ----- --.
제4조(지원대상 및 지원한도) ①(생 략) 1.-2. (생략) 3. <u>조경시설, 어린이놀이터 및 경 로당시설 보수</u> 4.-5.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지원대상 및 지원한도) ①(원 안과 같음) 1.-2. (원안과 같음) 3. <삭제>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 당시설 보수 4.-5.(원안과 같음) 제6조(우선순위) ①각 공동주택의 지원 우선순위는 준공인가년도, 세대수, 사업의 긴급성, 주민 이용 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. ②아파트단지 등 승용차요일제(이하 “승용차요일제”라 한다)의 자 율참여를 위하여 아파트관리규약 에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사항 을 포함하는 규약을 개정할 경 우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 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원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 제6조(위원회 구성)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생략 ④생략 1.(생 략) 2.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인 3.생략 제7조~제18조(생 략) [별지 제1호 서식]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신청서 조경분야	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 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행사업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 제7조(위원회 구성)①(원안과 같음) ②----- 17인 ----- ③(원안과 같음) ④(원안과 같음) 1.(원안과 같음) 2. ----- 4인 ----- 3.(원안과 같음) 제8조~제19조(원안 제7조 내지 제18조와 같음) [별지 제1호 서식]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신청서 <u><삭 제></u>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서순보 의원의 11인이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(안)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”로 한다.

안 제2조중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”을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3호중 “조경시설”을 삭제한다.

안 제7조 내지 제18조를 제8조 내지 제19조로 각각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안 제6조(우선순위) ①각 공동주택의 지원 우선순위는 준공인가 년도, 세대수, 사업의 긴급성,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아파트단지 등 승용차요일제(이하 “승용차요일제”라 한다)의 자율참여를 위하여 아파트관리규약에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사항을 포함하는 규약을 개정할 경우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행사업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안 제6조를 제7조 하고 동조제2항중 “15인”을 “17인”하며, 동조 제4항제2호중 “2인”을 “4인”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중 “조경분야”를 삭제한다.